

◆ 소방펌프 기동·정지압력의 건

질의1)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로 조절해야 하는지?

답변) 옥외, 옥내, 옥외품소화전을 하나의 소방펌프에 연결, 설치한 경우 각 소화전마다 방수시험을 하여 소화가 가능한 최소필요압력을 펌프기동압력으로 세팅하여야 할 것이다.

질의2) 소방펌프(주·보조)를 항상 자동상태로 두어야 하는지?

답변) 기동용 수압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동이 되어야 한다.

질의3) 소화전용 소화수 라인을 타 업체와 연결하고 연결 밸브를 오픈하여 사용(압력 4K)할 때 법적, 기타 화재예방, 진압시 문제점은?

답변)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으므로 안된다. 즉, 자체 급수원이 있어야 한다.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압력 4K의 급수원의 신뢰성이 있는 기를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. 타 업체의 급수원이므로 임의로 조정이 불가하므로 유사시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◆ 단락과 단선의 차이점

○ 단선

-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선은 보통 2개선(+)(-)으로 이루어져 있다. 이 두 선 중 한 선이 끊어져 전선 부근에 있는 가연물에 닿으면 그 접촉부분에 열이 발생하고, 이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를 단선으로 발생한 화재라고 한다.

○ 단락

- 전선을 이루고 있는 두 선을 싸고 있는 피복이 벗겨지는 등으로 인하여 서로 접촉된 상태를 단락이라고 한다. 이 때 전선에는 아주 큰 전류가 흐르며 이 전류에 의해 많은 열이 발생하여 별화하는 것을 단락으로 발생한 화재라고 한다.

◆ 과부하로 인한 화재시 보험금 지급 여부

질의) 전기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, 그것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한꺼번에 꽂아서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면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?

답변) “전기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”는 부분에서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화재로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.

보험사는 화재보험 보통약관 6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의 ⑥항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보상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으나, 전기적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콘센트 자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.

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“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”이라는 별도 조항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.

또한, 관계법령은 우선 “실화책임에관한법률”과 민법 중에서 “불법행위” 부분과 “배상책임” 부분이 참고가 될 것이다.